국경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경숙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9027

발의연월일: 2025. 3. 18.

발 의 자: 강경숙·신장식·정춘생

문정복 · 김재원 · 김준혁

김준형 · 서왕진 · 진선미

백승아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919년 3월 1일 제국주의 일본의 식민통치를 거부하고 세계 만방에 독립 의지를 공식적으로 천명함. 3·1운동은 단순한 대일항쟁이 아니라 독립국가로서 대한민국의 존재를 대외적으로 선언하고, 이후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수립과 광복에 기틀을 마련한 역사적 사건임.

그러나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공식적으로 '독립선언일'로 명명한 기념일이 단순히 '3·1절'로 되어 있어 독립선언의 의미는 희석되고, 그본래의 역사적 의미를 온전히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대한민국의 정통성은 3·1 독립선언으로부터 시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해방 이후 친일 세력의 잔재가 청산되지 못하면서 3·1운동의 역사적 의미가 점차 축소되었음.

이에 3·1절의 명칭을 3·1 독립선언일로 변경하여 해당 국경일의 의미와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법통이 1919년 3월 1일에 시작되었음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

법률 제 호

국경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경일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3·1절"을 "3·1 독립선언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3·1절"을 "3·1 독립선언일"로 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국경일의 종류) 국경일은	제2조(국경일의 종류)	
다음 각 호와 같다.	,	
1. <u>3·1절</u> : 3월 1일	1. <u>3·1 독립선언일</u>	
2. ~ 5. (생 략)	2. ~ 5. (현행과 같음)	